

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	
번 호	24-124

제출년월일 : 2024. 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25. 상반기 운영 예정인 “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「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」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(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2) 필요성

-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주민편의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

- 1) 주민편의시설 운영 및 인력 운용 관리 일체
- 2)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

라. 민간위탁기간 : 2025. 4. ~ 2028. 3.(3년)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 위탁

바. 위탁시설 개요

- 1) 위 치: 마포구 당인동 1-30외 2필지
- 2) 시설규모: 연면적 7,693.65㎡(지하1층, 지상5층)
- 3) 층별현황

층별	면적(㎡)	시설내역
옥상	-	전망대·천문대
지상	5층	전망테라스(한강 및 광장), 편의점
	4층	다목적 체육관
	3층	다목적실, GX룸, 사무실
	2층	피트니스 사우나
	1층	만남의 광장, 카페·판매시설, 사무실, 관리사무실, 주차장(45대)
지하 1층	1877.32	기계실, 전기실, 방재실, 지하주차장(27대)

4) 위 치 도



5) 현장사진

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1) 소요예산 : 2,383,855천원
- 2) 산출근거

시설명	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	2,383,855		
주민편익시설	민간위탁	2,383,855	- 인건비 1,004,340천원 -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비 1,130,373천원 - 기타운영예산 249,142천원	구비 100%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
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전문적·능률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

- 2) 체육시설 운영·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, 시설을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자. 민간위탁 추진일정

- 1) '24. 11월 : 민간위탁기관 선정 계획 수립
- 2) '24. 12월 : 수탁기관 선정
- 3) '25. 1월 : 민간위탁 협약 체결
- 4) '25. 4월 : 주민편익시설 준공 및 위탁 운영 개시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 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15조(운영의 위탁)

-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-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서

위탁사무명	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		
국 명 (주관부서)	관광경제국 (체육진흥과)	체육진흥과장	(행정5급, 최한중, 9860)
		체육정책팀장	(행정6급, 임종훈, 9851)
		담당자	(행정6급, 하현용, 9853)
사무개요	○ 위탁사업 내용 1. “주민편익시설”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 2. “주민편익시설” 내에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·장비·물품·비품 등의 유지관리와 구입 등에 관한 사항 3. 주차장, 주변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. 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. 체육시설의 사용허가, 회원관리,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사항 6. 사용·수익허가(근린생활시설 임대 등)에 관한 사항		
민간위탁 추진목적	○ 체육관 관리에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체육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증대		
위탁근거	○ 법적근거 －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－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(운영의 위탁) －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		
위탁내용	○ 추진현황(※ 최초 위탁의 경우 생략) : 최초위탁 ○ 위탁기간 : 3년 (2025.4.1. ~ 2028.3.31.) ○ 위탁내용 － 프로그램 편성·운영 및 시설대관 － 강사채용 및 회원관리 － 수강료 징수 및 시설물 관리 － 사용·수익허가(근린생활시설 임대) 등		

적정성 검토	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, 제15조 등에 따라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, 운영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○ 생활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																	
(기존)수탁기관 및 선정 방법	○ 수탁기관: 최초위탁 예정																	
수탁기관 선정 방법	○ 수탁기관: 미 정 ○ 수탁기간: 2025. 4. 1. ~ 2028. 3. 31. ○ 소요예산: 2,383,855천원(예정) ○ 선정방법: 공개모집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 위탁																	
민간 위탁금 (예산지원형 위탁 시 기재)	○ 소요예산 : 2,383,855천원(예정) ○ 산출근거 <table><tr><th>시설명</th><th>구분</th><th>금액(천원)</th><th>산출내역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계</td><td>2,383,855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주민편의 시설</td><td rowspan="3">민간 위탁금</td><td rowspan="3">2,383,855</td><td>- 인건비 1,004,340천원</td><td rowspan="3">구비 100%</td></tr><tr><td>-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비 1,130,373천원</td></tr><tr><td>- 기타운영예산 249,142천원</td></tr></table>	시설명	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	계		2,383,855			주민편의 시설	민간 위탁금	2,383,855	- 인건비 1,004,340천원	구비 100%	-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비 1,130,373천원	- 기타운영예산 249,142천원
시설명	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														
계		2,383,855																
주민편의 시설	민간 위탁금	2,383,855	- 인건비 1,004,340천원	구비 100%														
			-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비 1,130,373천원															
			- 기타운영예산 249,142천원															
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	○ 기대효과 -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체육관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 -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운영함에 따라 체육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○ 향후계획 - '24. 11월 : 민간위탁기관 선정 계획 수립 - '24. 12월 : 수탁기관 선정 - '25. 1월 : 민간위탁 협약 체결 - '25. 4월 : 주민편의시설 준공 및 위탁 운영 개시																	